보험계약대출 약정서

개정일자 2026년 4월 7일

이 약정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계 법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본인은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음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1조(정의)

(1)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것을 말한다.
(만기보험금이 있는 상품의 경우, 만기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 범위)

(2)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은 보험계약대출의 기초가 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제2조(보험계약대출기간, 원리금상환)

보험계약대출의 대출기간은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의 보험기간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일 전)내로 하며, 본인은 언제라도보험계약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단, 연금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종신형 또는 조기집중형)로 연금개시를 신청할 때에는 보험계약대출이 불가하여 기대출된 보험계약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나, 해약환급금이 존재하는 형태(확정형 또는 상속형 또는 실적배당형)로 연금개시를 신청할 때에는 연금개시일 이후에도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제3조(대출이자납부 등)

(1) 보험계약대출의 이자율은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르며,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이후의 기간에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한다.

(2) 보험계약대출이자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회사가 정한 이자납부일에 납부한다.

(3) 이자납부일을 경과하여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미납된 보험계약대출이자에 가산이자를 부과한다.

※ 계산식

보험계약대출금×이자율=보험계약대출이자(정상이자)
미납된 보험계약대출이자(정상이자)×이자율=가산이자

(4) 이자납부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최초 영업일에 이자납부할 수 있다.

(5) 이자납부일 이전에 이자를 납부한 때에는 이자납부일을 기준으로 선납한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할인한다.

(6) 이자납부는 은행자동이체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전화이체나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 ARS, ATM)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사에 내방하여 납부할 수 있다.

(7) 은행자동이체 납부시 5일단위(5, 10, 15, 20, 25, 말일)의 이체일중 계약자가 지정하는 이체일을 이자납부일로 하며, 이자 미납 시 회사는 그다음 5일단위 이체일에 재청구한다. 단, 재청구일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자납부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동이체일을 맞추기 위해 이자를 인출할 수도 있다.

(8)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보험계약대출이자의 미납일수가 180일을 경과하는 경우, 회사는 은행자동이체 청구를 정지한다.

(9) 보험계약대출 실행일에 상환되는 경우 1일분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제4조(즉시변제)

(1)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로 한다. 단, 회사에서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는다.

①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대상계약이 무효로 된 때

② 2002. 8. 1일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을 기초로 한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납입 지연 등 사유로 보험계약대출원리금 합계액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한 때

③ 2002. 8. 1일부터 2005. 3. 31일까지 체결된 보험계약을 기초로 한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대상보험계약이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해지되고 보험계약대출원리금 합계액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한 때

④ 2005. 4. 1일부터 체결된 보험계약을 기초로 한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보험료미납을 이유로 대상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때 (해지시점부터 대출/상환/이자수납 불가)

(2) 제1항 2호, 3호의 경우에 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지일 7 영업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다.

(3) 보험계약대출 처리 후 계약사항 변경이나 기타사정으로 해약환급금이 변동되어 보험계약대출원리금 합계액이 그 해약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계약자는 초과분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변제)

보험계약대출계약에서 정한 제지급금(제보험금, 반환보험료, 해약환급금, 배당금 등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대출기간의 만료 여부와 상관없이 제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공제하고 잔액을 계약자나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등에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주소 등 변경통지)

(1) 본인은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2)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이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단, 계약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모바일 등기, 배달증명부내용증명 등)으로 안내한다.

제7조(부대비용)

보험계약대출 관련 인지세는 각 50%씩 회사와 계약자가 부담하며, 인지세를 제외한 기타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보험계약대출 약정서

개정일자 2026년 4월 7일

이 약정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계 법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본인은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음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1조(정의)

(1)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것을 말한다.
(만기보험금이 있는 상품의 경우, 만기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 범위)

(2)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은 보험계약대출의 기초가 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제2조(보험계약대출기간, 원리금상환)

보험계약대출의 대출기간은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의 보험기간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일 전)내로 하며, 본인은 언제라도보험계약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단, 연금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종신형 또는 조기집중형)로 연금개시를 신청할 때에는 보험계약대출이 불가하여 기대출된 보험계약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나, 해약환급금이 존재하는 형태(확정형 또는 상속형 또는 실적배당형)로 연금개시를 신청할 때에는 연금개시일 이후에도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제3조(대출이자납부 등)

(1) 보험계약대출의 이자율은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르며,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이후의 기간에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한다.

(2) 보험계약대출이자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회사가 정한 이자납부일에 납부한다.

(3) 이자납부일을 경과하여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미납된 보험계약대출이자에 가산이자를 부과한다.

※ 계산식

보험계약대출금×이자율=보험계약대출이자(정상이자)
미납된 보험계약대출이자(정상이자)×이자율=가산이자

(4) 이자납부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최초 영업일에 이자납부할 수 있다.

(5) 이자납부일 이전에 이자를 납부한 때에는 이자납부일을 기준으로 선납한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할인한다.

(6) 이자납부는 은행자동이체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전화이체나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 ARS, ATM)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사에 내방하여 납부할 수 있다.

(7) 은행자동이체 납부시 5일단위(5, 10, 15, 20, 25, 말일)의 이체일중 계약자가 지정하는 이체일을 이자납부일로 하며, 이자 미납 시 회사는 그다음 5일단위 이체일에 재청구한다. 단, 재청구일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자납부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동이체일을 맞추기 위해 이자를 인출할 수도 있다.

(8)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보험계약대출이자의 미납일수가 180일을 경과하는 경우, 회사는 은행자동이체 청구를 정지한다.

(9) 보험계약대출 실행일에 상환되는 경우 1일분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제4조(즉시변제)

(1)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로 한다. 단, 회사에서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는다.

①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대상계약이 무효로 된 때

② 2002. 8. 1일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을 기초로 한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납입 지연 등 사유로 보험계약대출원리금 합계액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한 때

③ 2002. 8. 1일부터 2005. 3. 31일까지 체결된 보험계약을 기초로 한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대상보험계약이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해지되고 보험계약대출원리금 합계액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한 때

④ 2005. 4. 1일부터 체결된 보험계약을 기초로 한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보험료미납을 이유로 대상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때 (해지시점부터 대출/상환/이자수납 불가)

(2) 제1항 2호, 3호의 경우에 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지일 7 영업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다.

(3) 보험계약대출 처리 후 계약사항 변경이나 기타사정으로 해약환급금이 변동되어 보험계약대출원리금 합계액이 그 해약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계약자는 초과분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변제)

보험계약대출계약에서 정한 제지급금(제보험금, 반환보험료, 해약환급금, 배당금 등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대출기간의 만료 여부와 상관없이 제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공제하고 잔액을 계약자나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등에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주소 등 변경통지)

(1) 본인은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2)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이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단, 계약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모바일 등기, 배달증명부내용증명 등)으로 안내한다.

제7조(부대비용)

보험계약대출 관련 인지세는 각 50%씩 회사와 계약자가 부담하며, 인지세를 제외한 기타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